



# 합작법무법인 내 선임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의 겸직허가 신고 등 지침

2023. 2. 6.

지침

제1조 [ 목적 ] 이 지침은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11 제3항 및 법무부 예규 제1307호 합작법무법인 선임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 겸직허가지침(이하 “법무부지침”이라 한다)에 따른 합작법무법인 내 선임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의 겸직허가 및 허가취소의 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겸직허가신청서의 경유 ] ①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11 제3항 및 법무부지침 제3조에 따라 합작참여자 구성원 직을 겸직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고 한다)은 법무부지침 별지 제1호 서식의 겸직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여권, 외국인등록증명서 또는 신청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2. 신청인이 합작참여자의 구성원임을 입증하는 서류(채직증명서 등)
3. 신청인이 합작법무법인의 선임변호사 또는 선임외국법자문사임을 입증하는 서류
4. 그 밖의 참고 서류

② 대한변호사협회는 제1항의 겸직허가 신청서류의 기재사항에 흠결이 있거나 증명서류가 미비되어 있으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대한변호사협회는 제1항의 겸직허가 신청서류(대한변호사협회의 보완 요구가 있는 경우 그 요구에 따라 보완된 서류)에 대한변호사협회를 경유하였음을 표시하는 문구를 부기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④ 대한변호사협회는 신청인의 겸직허가 신청에 관하여 법무부에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3조 [ 겸직허가의 신고 ] ①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11 제3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합작참여자 구성원 겸직 허가를 받은 사람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대한변호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무부지침 제3조 제1항의 신청서와 제7조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허가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겸직 허가를 갱신받은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이 경우 법무부지침 제9조 제2항의 갱신신청서와 제7조의 갱신허가통지서를 각각 제1항의 신청서와 허가통지서로 본다.

제4조 [ 겸직허가 취소사실의 신고 ] ① 법무부지침 제12조에 따라 겸직 허가의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지체없이 대한변호사협회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에는 법무부지침 제12조 제2항, 같은 지침 제7조에 따른 취소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부 칙 (2023. 2. 6.)

이 지침은 2023. 2. 6.부터 시행한다.